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508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786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550830 판결

전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한솔지, 정솔잎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2. C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8.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과 D 사이에 2019.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0. 1. 접수 제148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D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11. 8. 접수 제1731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D의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D에게 2019. 8. 3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을 대위하여 대출기관에 이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차전5386호로 구상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0. 7. 27. 'D은 원고에게 152,085,026원 및 그 중 145,824,4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0. 8. 13.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순차로

‘제1, 2 처분행위’,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1) 피고 B : 2019. 8. 29.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2019. 10.

1.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2) 피고 C : 2019. 11. 8.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2019. 11. 8.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제1, 2 처분행위일인 2019. 8. 29. 및 2019. 11. 8. 무렵,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D은 자금을 대출받은 점, 제1 처분행위는 D의 보증사고일(2019. 8. 31.) 불과 이틀 전이고 제2 처분행위는 보증사고일 이후인 점, 제 1 처분행위 10여일 후부터 각 대출기관의 가압류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여러 차례 가압류등기가 경로된 점, 당시 D은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니,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제1, 2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제1 처분행위 당시 기준 D의 재산)

구분	순번	재산 표시	가액(원)	인정근거
적극 재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	1,304,379,200	갑 제3호증,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2021. 2. 8.자)
		합계	1,304,379,200	
소극 재산	1	E조합에 대한 채무	550,000,000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1. 4. 21.자)
	2	G에 대한 채무	239,049,180	갑 제8호증
	3	피고 B에 대한 채무	280,000,000	을가 제1, 2호증
	4	피고 C 내지 H에 대한 채무	230,000,000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5	I조합용인시지부에 대한 채무	40,000,000	갑 제2, 9호증
	6	J조합에 대한 채무	156,440,890	J조합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결과(2021. 4. 29.자)	
7	F조합에 대한 채무		80,346,813	F조합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결과(2021. 4. 21.자)
8	K조합에 대한 채무		19,907,046	K조합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결과(2021. 4. 16.자)
9	용인시장에 대한 채무		3,521,840	갑 제7, 10호증
10	L에 대한 채무		9,089,000	갑 제6호증
11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동부 지사)에 대한 채무		395,150	갑 제11호증
12	용인세무서에 대한 채무		8,814,790	갑 제12호증
13	원고에 대한 채무	2004.12.30. M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D의 연대보증에 기한 구상금채무	7,182,150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2008.6.30. N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D의 연대보증에 기한 구상금채무	33,473,664	
합계			1,685,220,523	

소극재산 순번 4에 관하여 : 원고는 각 차용증 금액 내지 계좌이체내역 모두를 합산한 금액을 채무로 주장하고, 피고 B은 계좌이체에 근거한 것만 채무액에 합산되어야 하고, D의 동업자 N이 피고 C에게 이체한 내역은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입출금 내역만으로 채무 액수와 변제 내역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므로,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차용증)의 각 기재에 의해 채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소극재산 순번 5, 6, 7, 13에 관하여 : 피고 B은 해당 채무 중 원고와 D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원고가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후 원고가 이를 변제함으로써 D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구상권의 한도 내에서 해당 채권에 관한 권리가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하므로 해당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구상금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소극재산에 관한 법리, 제1 처분행위 당시 해당 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 B의 주장처럼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행기 미도래 채권이라도 채권차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순번 13의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구상금채권으로 정리하였으나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서는 J조합 내지 O은행의 채권으로 이미 발생되어 있어 소극재산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채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3)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처분행위 당시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 제2 처분행위 당시에는 D의 적극재산은 그대로, 소극재산은 지연손해금의 증가 등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여 역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는바, 제1, 2 처분행위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기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제1, 2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사업상 D를 알고 지냈는데, D의 사업 자금 대여 요청으로 2015년경 280,000,000원을 D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 B의 계속된 변제 요청에도 D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피고 B은 2021. 6. 24.자 참고서면을 통해서 D이 사업의 갱생과 계속적 추진을 위해 피고 B과 기존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다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함).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D의 인근 마을 주민으로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해주었다. D이 변제일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아 2019. 11. 8.에 이르러서야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3) 판단

피고들은 해당 사유를 들어 제1, 2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제1, 2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D의 지인으로 D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갚지 못하였고 결국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나타날 뿐이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별지)

목 록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 1398㎡2. 전 4924㎡3. , , , ,

위 지상

경량철골조 유리지붕 단층 식물재배온실 4964.4㎡

경량철골조 유리지붕 단층 식물재배온실 4964.4㎡

(별지)

내역

가. 채권1

- 보증일자 : 2016.08.30
- 보증금액 : 42,500,000원
- 피보험자(대출기관) : () (화성동탄지점)
- 대위변제일자 : 2019.11.29
- 대위변제금액 : 44,572,641원
- 대위변제잔액 : 44,572,641원
- 손해금 등 : 2,867,847원

나. 채권2

- 보증일자 : 2017.02.22
- 보증금액 : 42,500,000원
- 피보험자(대출기관) : () (화성동탄지점)
- 대위변제일자 : 2019.11.29
- 대위변제금액 : 43,446,961원
- 대위변제잔액 : 43,426,934원
- 손해금 등 : 2,417,630원

다. 채권3

- 보증일자 : 2014.01.20
- 보증금액 : 85,000,000원
- 피보험자(대출기관) : () (용인시지부)
- 대위변제일자 : 2020.03.27
- 대위변제금액 : 35,106,590원
- 대위변제잔액 : 35,106,590원
- 손해금 등 : 928,755원

라. 채권4

- 보증일자 : 2018.06.18
- 보증금액 : 8,500,000원
- 피보험자(대출기관) : () ()
- 대위변제일자 : 2020.07.02
- 대위변제금액 : 9,081,145원
- 대위변제잔액 : 9,081,145원
- 손해금 등 : 43,357원

마. 채권5

- 보증일자 : 2006.09.28
- 보증금액 : 18,000,000원
- 피보험자(대출기관) : () ()
- 대위변제일자 : 2020.07.22
- 대위변제금액 : 13,642,038원
- 대위변제잔액 : 13,637,139원
- 손해금 등 : 2,988원

